



기업책임경영 (RBC)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권고안

비공식 번역



OECD 법적 수단

이 작업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판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의견과 사용된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의 경계,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진 저작권: © Andrew Esson / Baseline Arts Ltd

이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권한 없이 무료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 번역물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OECD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공식 영문 및 불문 버전은 OECD 웹사이트 <https://legalinstruments.oecd.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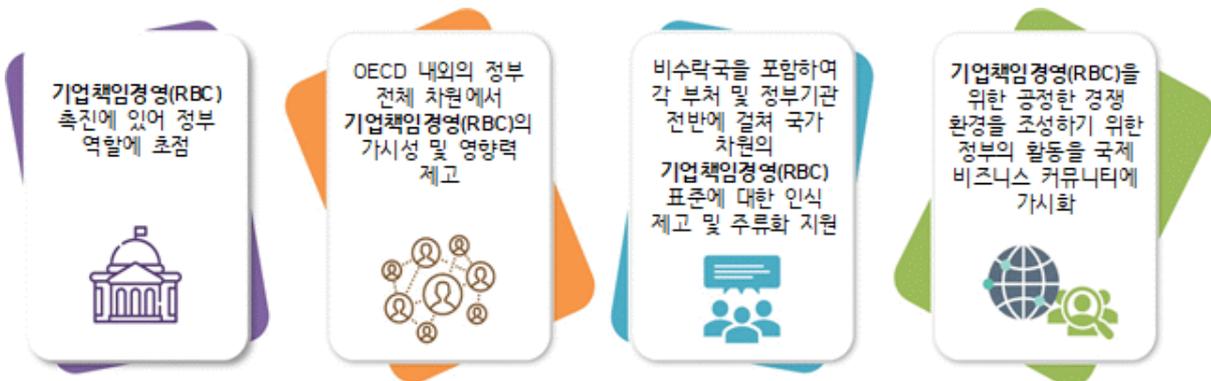
기업책임경영(RBC)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권고안은 투자위원회의 제안으로 2022년 12월 12일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3년 2월 14-15일 개최된 OECD 기업책임경영 각료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정부, 기타 공공기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책임경영(RBC)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원칙과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기업책임경영(RBC) 또는 기업책임경영(RBC) 관련 분야의 OECD 표준에서 제시된 정부 정책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침을 통합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OECD의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연구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 지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기업책임경영(RBC)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왔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LEGAL/0144](#)]을 포함한 OECD RBC 도구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며 기업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체 활동에서 기업책임경영(RBC)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이 RBC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내 법률, 정책, 규정, 이니셔티브를 통해 RBC 관련 원칙과 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점점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RBC 기준의 이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원의 정책 조치의 난립과 정책 일관성 부족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RBC에 대한 정부 조치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공공조달, 국영기업, 투자, 무역 및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RBC에 대한 정부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다양한 OECD 도구와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은 기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하고 정책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 촉진 및 이행에 관한 대화를 점점 더 활발히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다양한 OECD 도구와 수단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정부가 RBC를 촉진하고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 OECD 기준 및 지침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본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권고안 개발 과정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은 2019년부터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들이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국내외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은 정부를 위한 일관된 지침을 단일한 포괄적 문서로 담기 위해 반복적 초안 작성 과정을 통해 다양한 OECD 표준과 지침 문서에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 지침들을 통합했습니다. 본 권고안의 수평적이고 분야 간 교차적인 특성과 다른 정책 분야의 여러 표준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021년 9월에는 OECD 기구들 간의 내부 협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12월에는 공공 자문이 시작되어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과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는 권고안 초안을 승인하고 2022년 11월 이사회의 채택을 위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안 범위

본 권고안은 일관된 정책 권고와 원칙을 종합하여 각국 정부가 기업책임경영(RBC)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이나 OECD 실사 지침의 범위(실질적 내용이나 적용에 있어)를 확장하거나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임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본 권고안은 RBC 촉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연락사무소의 임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본 문서는 국내연락사무소가 보다 광범위한 구제수단 체계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책임은 이행절차를 통해 규정됩니다.

본 권고안은 6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21개의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OECD 기업책임경영(RBC) 센터는 국내외 활동과 지역 행사를 통해 효과적인 보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은 실용적인 지침 개발과 경험 및 모범관행의 교류를 촉진하여 동료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수락국들을 지원하고 권고안의 이행을 점검할 것이며, 특히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입안자 라운드테이블(Policymakers Roundtable)을 통해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권고안의 이행, 보급

및 지속적인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는 2028년 OECD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OECD의 기업책임경영(RBC)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neguidelines.oecd.org/>

연락처: rbc@oecd.org

OECD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협약 제5조 b)를 고려하고;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문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하 "OECD 가이드라인")[[OECD/LEGAL/014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OECD/LEGAL/0307](#)], 투자정책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2](#)],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적 특성에 관한 권고안[[OECD/LEGAL/0476](#)]을 고려하고;

분쟁영향지역 및 고위험지역의 광물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6](#)], 채취산업 분야의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실사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27](#)], 책임 있는 농업 공급망을 위한 OECD-FAO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28](#)], 의류 및 신발 분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37](#)], 그리고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3](#)]에서 언급된 OECD 실사 지침을 고려하고;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에 관한 협약[[OECD/LEGAL/0293](#)], 공공서비스에서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16](#)], 내부통제, 윤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모범관행 지침 부속서 II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78](#)],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7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1](#)], 공적지원 수출신용과 환경사회 실사에 관한 공통접근방식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93](#)], 공공조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1](#)],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3](#)], 국영기업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4](#)], 공공청렴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35](#)], 열린정부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38](#)], 지속가능한 대출관행과 공적지원 수출신용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2](#)], 뇌물과 공적지원 수출신용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7](#)],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9](#)], 국영기업의 반부패와 청렴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51](#)],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60](#)],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상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2017년 OECD DAC 혼합금융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된 다른 국제 표준들, 특히 기업과 인권 관한 UN 이행원칙,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 선언 및 이의 이행과 관련된 기존 정부 공약들을 고려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공통된 목표가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공헌을 장려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976년 OECD 가이드라인의 채택 이후, 2011년 개정을 포함한 후속 개정 이후, 기업이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원칙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왔음을 인식하고;

OECD 가이드라인과 OECD 실사 지침(이하 "OECD RBC 표준")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함을 인식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관련 국제 표준 및 협약에 따라 노동권과 환경 및 보건 표준을 보호하면서 역동적이고 잘 작동하는 기업 부문을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기업이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이행을 통해 17개 SDGs와 세부목표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이 민간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기업책임경영(RBC)이 기업지배구조, 인권(원주민의 권리, 성평등, 차별금지 포함),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반부패,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 경쟁, 과세 등과 특히 관련된 수많은 고려사항과 정책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OECD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에게 자사의 사업운영,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에서 OECD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안들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위험기반 실사("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사회적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기업책임경영(RBC)과 실사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장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의 채택과 공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관련 국제 및 국내 표준과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이 기업 행태를 다루는 한편, 정부는 고용주, 조달자, 국영기업을 통한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을 추진, 지원, 촉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정부가 기업의 사업운영,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에까지 확장되는 포괄적이고 공통된 실사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OECD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점차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 접근방식의 불균등한 이행 수준을 해소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연락사무소(NCP)가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점점 많은 OECD 표준들이 기업책임경영(RBC)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점차 다루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정책 분야들 간의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하도록 점차 요구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본 권고안이 다른 OECD 표준들이 다루는 분야 간 공통(cross-cutting)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OECD 기구들의 책임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OECD 표준들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표준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기업책임경영(RBC) 표준들 간의 일관성의 중요성과 정부들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른 주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책임경영(RBC) 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이 포용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에 대한 중요한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 권고안을 수락한 개별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하 "수락국")의 정치적, 행정적, 법적 맥락(서로 다른 정부 수준의 권한과 역량을 포함)이 RBC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기타 조치의 설계를 형성할 것임을 인식하고;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제안에 따라:

I. 본 권고안의 목적이 기존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의 범위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그러한 표준이 적용되는 행위자의 범주를 다루지 않으면서, 기업책임경영(RBC)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 동의한다.

II. 수락국은 **기업책임경영(RBC)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및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검토하며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이행과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기업지배구조,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반부패,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 경쟁, 과세를 포함하여 OECD 가이드라인과 기타 해당되는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이 다루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적절한 법적·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수락국은 현행 관련 법적·규제 프레임워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집행 및 규제 접근성을 포함한 모든 격차와 기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 일관성 촉진을 위해 법률과 정책의 실제적 또는 인식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지침을 제공하며, 이행상의 잠재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나 규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이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한다.
3.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제도적 조치의 적절성과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적·재정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4. 부차적 규칙, 입법 지침 또는 부문별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법률 또는 규제를 개발할 때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특히 OECD 실사 지침과 일치시킨다. 이는 책임 있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한 금융, 비재무적 위험 정보의 기업 공시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법률 또는 규제에 있어 특히 중요할 것이다.

III. 수락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업책임경영(RBC)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도구 및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가능한 경우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의 이행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인센티브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경우 OECD 실사 지침을 포함한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2. 무역 및 투자 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해 기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한다. 이는 이러한 정책과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이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해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를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발협력 노력, 특히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개발금융 수단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개발금융기관의 정책과 지속가능한 금융 및 혼합금융 수단은 OECD 실사 지침을 포함한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에 기반해야 한다.
 4.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기대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락국은 국내연락사무소(NCP)를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OECD 실사 지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5. 무역 지원, 경제외교 또는 기타 혜택과 같은 정부 지원과 서비스의 자격을 검토할 때 국내연락사무소(NCP) 이의신청 사건에서의 기업의 선의의 참여를 고려한다.
- IV. 수락국이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과 상업 활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기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1. 공공조달을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조달 정책(규제 및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기업책임경영(RBC)을 포함하며, 공공조달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실사를 촉진한다.
 2. 국영기업(SOE)이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대사항을 수립하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수립한다.
 3. 공적지원 수출신용 신청에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 부채, 보조금, 대출, 보증 또는 보험의 제공과 관리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의 이행을 지원한다.
- V. 수락국이 다음을 통해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해당 정책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기존 또는 잠재적인 기업책임경영(RBC) 규제 및 정책에 대해 기업(기업체, 산업계, 적절한 경우 사용자단체 포함)과 노동자단체, 시민사회, 영향을 받는 공동체, 학계를 포함한 기타 국내외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 해당 정책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의 촉진 방법 등 기존 또는 잠재적인 기업책임경영(RBC) 규제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락국은 중소기업과 같이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이행에 있어 특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과, 인권옹호자와 원주민과 같이 기업책임경영(RBC) 정책의 개발과 이행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집단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된 과제나 기회를 정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의와 참여를 위한 투명한 채널을 제공하고, 부당한 압력 없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책임경영(RBC)의 효과적인 이행, 모니터링 및 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정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책임성과 공익을 증진하며, 특히 이해상충 상황 관리, 경쟁법 및 규정 집행, 로비 활동과 정당 및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 대한 투명성 확립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의 공공 정책 장악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협력을 주도하고 기업책임경영(RBC) 촉진을 위한 집단적 이니셔티브를 촉진한다.

VI. 수락국이 **구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업책임경영(RBC) 표준 미준수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효과적인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구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국내연락사무소(NCP)가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표준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하게 특정 사례에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수락국은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사회적 파트너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I. 수락국이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된 정책과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다음을 포함한 조치들을 통해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된 정책과 관행 간의 일치와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정부기관과 기구들 간의 일관성을 증진한다:
 - a. 분야 간 계획을 포함하여, 부처, 공공기관, 정부 수준 간의 일관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을 장려한다;
 - b. 기존 관행과 정책에서 발생하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 평가 및 해결한다;
 - c. 관련 정책에 기업책임경영(RBC)의 통합과 주류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d. 기업책임경영(RBC) 정책과 표준의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기구들에 적절한 예산, 인력 및 권한을 부여한다.
2.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지원한다. 이는 이의신청 사건이 해당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부기관과 기구들에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성명서와 이의신청 사건 관련 보고서를 알리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3.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와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OECD 가이드라인 및 기타 국제 기업책임경영(RBC)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 수준의 기업책임경영(RBC) 정책 일관성을 촉진한다.

VIII. 사무총장에게 본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IX. 수락국에게 정부의 모든 단계(중앙 및 지방 정부 모두)에 본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X. 비수락국에게 본 권고안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XI. 기업책임경영 실무작업반(WPRBC)을 통해, 그리고 다른 관련 OECD 기구들과 협력하여,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게 다음을 **지시**한다:

- a. 본 권고안의 이행에 관한 실질적 경험을 포함하여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 역할을 수행한다;
- b. 본 권고안의 이행에 있어 수락국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 c. 본 권고안의 채택 후 5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최소 10년마다 본 권고안의 이행, 보급 및 지속적인 관련성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OECD 소개

OECD는 각국 정부가 함께 세계화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독특한 포럼입니다. OECD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제와 같은 새로운 발전과 현안을 이해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하도록 돕는 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가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모범 관행을 확인하고,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OECD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유럽연합은 OECD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 법률문서

1961년 OECD 설립 이후 약 460개의 실질적 법률문서가 그 체제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OECD 법령(즉, OECD 협약에 따라 OECD 이사회가 채택한 결정과 권고안)과 OECD 체제 내에서 개발된 기타 법률문서(예: 선언문, 국제협정)가 포함됩니다.

시행 중이거나 폐지된 모든 실질적 OECD 법률문서는 OECD 법률문서 종합본 온라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결정문(Decisions)**은 이사회가 채택하며 채택 시점에 기권한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정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권고안(Recommendations)**은 이사회가 채택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그 안에 포함된 원칙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나타내며 수락국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반합니다.

□ **실질적 성과문서(Substantive Outcome Documents)**는 OECD 기구가 아닌 명시된 개별 수락국들이 기구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각료급, 고위급 또는 기타 회의의 결과물로 채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 원칙이나 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격식을 갖춘 성격을 갖습니다.

□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은 기구의 체제 내에서 협상되고 체결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약정, 양해 및 기타(Arrangement, Understanding and Others)**: 공적지원 수출신용에 관한 약정, 해상운송원칙에 관한 국제양해, 개발원조위원회(DAC) 권고안과 같은 여러 다른 유형의 실질적 법률문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OECD 체제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